의안번호	제7	17호	
의 결	2024년	월	일
연월일	(제	회)	

2025년도 (재)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

제 출 자	충청북도교육감
제출연월일	2024년 10월 2일

# 2025년도 (재)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

의 안 번 호 717

제출연월일: 2024. 10. 2.
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#### 1. 제안이유

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특별회계 세출예산에 (재)충북교육성장 지원재단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하여 「지방재정법」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#### 2. 주요내용

- 대상기관: (재)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
- ㅇ 출연목적 및 필요성
  - (재)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은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창의적인 인재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장학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
  - (재)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출연금 재원이 필요함
- 출연예정금액: 180,000천원
- 출연내역: (재)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사업비
- 기대효과
  - 충북 도내 우수학생 조기발굴 및 성장 지원
  - 다양하고 창의적인 미래 인재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충북교육 실현
- 3. 의안전문: 붙 임
- 4. 관계법령 발췌: 붙 임
- 5. 기타

# ① 출연 심의요구서

7 11 LI LI	재정복지과	소속부서장	팀 장	담당주무관	전화
주 관 부 서 	학생복지팀	박종한	김선희	이주신	290-2576

기 관 명	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				
출 연 대 상	<ul> <li>○ 일반현황</li> <li>(소재지)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</li> <li>(주요사업)</li> <li>-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, 장학금 조성·관리사업</li> <li>-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</li> <li>- 국제교류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</li> <li>- 저소득층학생 지원 사업 등</li> <li>○ 이사장: 최지현</li> </ul>				
출 연 사 업 비	○ 2025년 - 출연 예정금액: 180,000천원 -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 -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 - 180,000 180,000 180,000 0 0 0 180,000  * 기타: 농협은행과의 금고약정에 따른 교육금고지원 협력사업비				
출 연 필 요 성	○ 창의적인 인재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장학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(재)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 필요				
근거·법령	○ (재)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※ 제8조(출연금) 교육감은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.				
지 도 감 독 부 서 의 견 (총 평)	<ul> <li>○ (재)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금은「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설립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8조(출연금)에 근거하고 있으며, 출연금 재원은 충북교육청과 농협은행과의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로 함</li> <li>○ 충북 도내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우수 학생을 조기 발굴하여 성장을지원하고,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인재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(재)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은타당할 것으로 사료됨</li> </ul>				
첨 부 자 료	1.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. 출연기관 현황(기관연혁, 인원 및 조직현황 등) 3. 출연사업계획서				

# ①-① 관리·감독부서 검토결과서

#### ①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

- (경영평가) 해당없음
- (재정사업평가 및 감사결과) 해당없음

#### ②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

- 금회 상정 의안인「2025년도 (재)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」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 본예산에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함
- (재)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금은 「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8조(출연금)에 근거하고 있으며, 재원은 충청북도교육청과 농협은행과의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로 2021년 금고 약정에 따라 4년간 총 719,000천원의 협력사업비가 예정되어 있음

\* 4년간 협력사업비 2022년 179,000천원, 2023년 180,000천원 2024년 180,000천원, **2025년 180,000천원** 

○ 충북 도내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우수 학생을 조기 발굴하여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, (재)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의 원활한 장학 사업 운영을 위해 출연 승인을 건의함

#### ③ 출연금 검토

(단위: 천원)

	2024년		2025년	예산안	
내 역	2024년 예산액(최종) (C)	기 관 요구액(A)	실 과 검토액(B)	증감 (B-A)	전년대비 증감액 (B-C)
(재)충북교육성장 지원재단 출연	180,000	180,000	180,000	-	-

# ④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

사 업 목 적	출 연 의	유 사	사 업 방 식	사 업 의	투자대비	재 원 분 담
명 확 성	타 당 성	중 복 성	효 율 성	시 급 성	효과성	적 절 성
여	여	부	여	ф	ф	여

# ①-② 출연 기관현황

설립근거	재단법인 충	보교유서	자기의	때다 선리	으여 ㅁ	l 지의(	에고	화 조레	전화번호: 04	43-290-2576
	게다ㅂ다 6	<del>1</del> #40	O/\IE/	/IC 58	<u></u>	· 기년	<sup>∨</sup>    ∟	그런 그녀	홈페이지: w	ww.cbe.go.kr
소 재 지	충북 청주	시 서원	구 청	남로 192	29	법인	<u>l</u> 등	록번호	150122-	0002411
연 역 혁	(설립) 200 (설립조례				학재단)		٠.	형태 출연)	출연	기관
	(재단명칭 (출연기관							기관) 또는 출연기관)	2,107 <sup>년</sup> (직전연도	
인원현황	7	4			상	근			비성	상근
('24. 9. 현원기준)	13	명			0	명			13	명
	직 책	성 5	명		주요	경력			임	기
	이사장	최지점	<u> </u>	충청	대학교	l 초빙	J교 <del>.</del>	수	2023.4.4.	~2027.4.3.
	상임이사	김태형	형	충청북	도교육	유청 부	-교-	육감	재임	기간
	이사	박종유	종원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국장					재임	기간	
	이사	최동	하	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장					재임	기간
	이사	서성	범	충청북도교육청 행정국장				재임	기간	
임원	이사	박종현	한 경	충청북도교육청 재정복지과장			재임기간			
('24. 9. 현원기준)	이사	경준성	<u> </u>	아하정보시스템 대표			2023.4.4.	~2027.4.3.		
	이사	곽영선	<u> </u>	I키움(	거린이	집 보	육고	고사	2023.4.4.	~2027.4.3.
	이사	이규크	호	㈜충	북프로	벨 선	์ ปี	장	2023.4.4.	~2027.4.3.
	이사	정상원	2		농업	종사			2023.4.4.	~2027.4.3.
	이사	장우	<u></u> 한	국지방교:	육연구:	소 선인	l연-	구원/팀장	2023.4.4.	~2027.4.3.
	감사	노재	경	충청북	도교육	유청 여	산	과장	재임	기간
	감사	이재당	경	(3	P)고운·	뜰 대	Ŧ		2023.4.4.	~2025.4.3.
주요업무	<ul><li>○ 설립목<sup>2</sup></li><li>○ 주요사</li></ul>						ᆡ	할 수 있	l는 인재 육	성
최근 3년간	연 도	2022	2023	2024	יעד	구현횡	ŀ	자산		542 총액)
시	예산액	383	456	490	(빈	백만원)		부채		) 총액)
	농 협 지원액	179	180	180	27.0	4.8.31.기준		자본		542 남 총액)
  최근 2년간	현 황		총수익	ļ		총비	비용		당기선	는이익
경영 성과	연 도	2022	2	2023	20	22		2023	2022	2023
(단위: 백만원)	금 액	212		247	20	)3		231	9	16

# ①-③ 출연 사업계획서

사 업 명	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	구브	출연금	180,000천원
주관부서	재정복지과	1 正		160,000년 편

## □ 목적 및 필요성

○ 충북 도내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우수 인재를 조기 발굴하여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 육성

## □ 출연개요

- 사 업 명: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
- ㅇ 사업기간 및 출연액

(단위: 천원)

사업명	출연연도	사업기간	출연액	비고
재단법인 충북교육 성장지원재단 출연	2025년	2025. 1. ~ 12.	180,000	

- 주요내용: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사업비<sup>\*</sup>
  - \* 사업비: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, 장학금 조성·관리 사업,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, 국제교류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, 저소득층학생 지원 사업, 충청북도교육감이 위임·위탁 하는 사업,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출연근거: 「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8조(출연금)

# □ 연도별 지원내역(충청북도교육청 금고 약정사항)

○ 2018년~2021년 지원현황

(단위: 천원)

구분	2018	2019	2020	2021	계
운영비*	150,000	150,000	150,000	150,000	600,000

\* 운영비: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/ 충북교육장학재단지원(운영비)

○ 2022년~2025년 약정현황

(단위: 천원)

구분	2022	2023	2024	2025	계
출연금*	179,000	180,000	180,000	180,000	719,000

<sup>\*</sup> 출연금: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/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출연(출연금)

## □ 기대효과

- ㅇ 충북 도내 우수학생 조기발굴 및 성장 지원
- ㅇ 다양하고 창의적인 미래 인재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충북교육 실현

# □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

- (재)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은 2000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총 14억원 이상의 장학금을 도내 학생들에게 지원하여 지속적인 장학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, 출연기관 고시와 정관 변경을 통한 재단 운영 활성화를 통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우수 학생을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음
- 재단의 주요 수입인 출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재단 목적사업 수행의 어려움과 장학사업 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됨

# 관련법령 발췌

## □ 지방재정법

-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  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  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# □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- 제20조(재정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.
  - ③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 □ **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** 제3조(사업)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- 1.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
- 2. 장학금 조성·관리 사업
- 3.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
- 4. 국제교류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
- 5. 저소득층학생 지원 사업
- 6. 충청북도교육감이 위임·위탁하는 사업
- 7.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제8조(출연금) 교육감은 재단의 목적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.